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출입항 신고자료, 전자어음 거래정보를 과세자료 제출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1. 19.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 제131호 및 제13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지방자치단체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호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자료	국세청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31	해양경찰청	「납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에 따라 신고하는 출입항 신고 자료 (승선자 명부 포함)	국세청	매월 말
13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자어음관리 기관에 등록된 전자어음 거래정보	국세청	매일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26